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. 9. 28 선고 2022가단2058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지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함성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태호, 김현민, 강연옥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종원

변 론 종 결 2022. 9. 7.

판 결 선 고 2022. 9. 28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3. 7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18. 3. 7. 접수 제5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1354호로 업무상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800,648,2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5. 11. 12.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C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, 2016. 6. 2.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 나. 제천시 D, E, F, G, H1)에는 채무자 C, 채권최고액 98,000,000원,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피고는 2013. 12. 16. C와 계약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를 인수하였으며,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00,000,000원으로 변경하였다.

다.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3. 7.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는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, 계약인수가 있었던 2013. 12. 16.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2. 3. 4.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계약인수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법률행위 또는 증여계약의 원인이 된 행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, 위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점에서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'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'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전인 2016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취하한 적이 있을 뿐인바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원고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성립한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하고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(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),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

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(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다41575 판결)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순번	지번	가액(원)	피담보채권액(원)
1	D 대 738㎡	92,250,000	71,918,538
2	E 전 1,070㎡	46,010,000	35,869,614
3	F 도로 247㎡	10,127,000	7,895,057
4	G 전 582㎡	18,624,000	14,519,359
5	H 대 150㎡	16,950,000	13,214,300
6	H 도로 165㎡	6,756,000	5,267,010
		190,717,000	148,683,878

나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각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새미

별지

1. 제천시 E 전 1070㎡
2. 제천시 F 도로 247㎡
3. 제천시 G 전 582㎡
4. 제천시 H 대 150㎡
5. 제천시 J 도로 165㎡

1) 각 분할,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공동담보목록